

대전지방법원 2021. 8. 10 선고 2019나122309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21. 8. 10 선고 2019나122309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11. 20 선고 2018가단1042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의

담당변호사 박종배

피고, 피항소인C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훈

변론 종결2021. 6. 22.

판결 선고2021. 8. 10.

제1심판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11. 20. 선고 2018가단1042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D 사이에 2018. 4. 9.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하고, 피고는 D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6. 1. 접수 제538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14행의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을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쳐 쓰고, 제2면 19, 20행의 "피고는 F 퇴직시 받은 퇴직금 8,000만 원, 친정 모로부터 받은 3,500만 원, 주택대출금 1,000만 원, 저축해 온 적금 등을 자금으로"를 "피고는 F 주식회사 퇴직시 받은 퇴직금과 보험금 등 5,144만 원, 친정 모로부터 받은 3,000만 원, 저축해 온 적금 등을 자금으로"로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윤종

판사윤현정

판사이태영

별지